

#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

의 안 번 호	880
--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6. 15.  
발 의 자 : 이하연의원 외8인

## 1. 제안이유

-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부실공사 방지와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규정함 (안 제1조)
- 나. 공사감독관 위촉대상을 관내 거주자중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총 40명 이내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22명과 공종별 전문가 8명 및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서 10명 이내의 시민감독관을 위촉도록 하고, 해촉 또는 위촉 비대상을 규정함 (안 제2조)
- 다. 공사감독관의 위촉은 추천 및 선정된 대상을 자격요건등을 제 검토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)
- 라. 시민감독관 지정 대상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, 시민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를 시장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자문, 감시활동·제보, 지역

주민의 민원·불편사항 전달, 공사시행에 관한 의견제출 등을 수행토록  
함 (안 제4조)

- 마. 시민감독관의 운영은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시행공사별로 시민공사  
감독관을 지정하고 모든 공사계획을 시민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  
함과 아울러 시민공사 감독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 
감독관의 제보 및 의견 등을 수렴, 공사시행에 적극 반영하고 그  
결과를 통보토록 함 (안 제5조)
- 바. 시민감독관의 공사현장 방문시 금지 사항을 정하여 시공자가 혼선을  
빚지 않도록 함 (안 제6조)
- 사. 공사 시행상 필요한 활동이나 회의등에 참석시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 
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고,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 
함 (안 제7조)

#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(이하 “시민감독관”이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촉대상 및 해촉)** ① 시민감독관은 총 40명의 범위내에서 각 호의 인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한다

1. 동장이 추천하는 각 동별 1명
2. 시장이 선정하는 공종별 전문가 8명
3.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추천 10명 이내

② 시민감독관 위촉대상은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고 건설공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, 위촉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.

1. 공사관련 업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 된 자
2.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
3. 기타 시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자

**제3조(위촉방법)** ① 동장이 추천하는 시민감독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.

② 시장은 선정 및 추천된 시민감독관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.

③ 시민감독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감독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민공사감독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대상공사 범위 및 업무)** ① 시장(사업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시민감독관을 지정해야 할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사 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

다만,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 공사는 제외 한다.

## 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② 시민감독관은 감독관으로 지정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
2. 위법부당한 사항과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활동 및 제보
3. 공사관련 지역주민의 민원 또는 불편사항 및 의견 전달

제5조(운영)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 공사별로 담당 시민감독관을 지정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시민감독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 또는 시공자는 시민감독관이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관련자료의 열람과 현장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이 시민감독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안내판 등에 지정된 시민감독관 명단과 연락지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시민감독관이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보 및 의견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반영할 수 없는 제보 및 의견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금지사항) 시민감독관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시공자에게 현장에서 공사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간섭하는 행위
2. 현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3. 기타 시장이 현장 활동의 금지사항으로 정한 행위

제7조(경비지원) ① 시장은 시민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감독여비 및 회의참석수당등 기본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감독여비의 지급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위 촉 장

제 호

주 소 :

성 명 :

위촉기간 :

귀하를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 
의하여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안 산 시 장 ○ ○ ○ (인)

(별지 제2호 서식)

##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증

제 호	2.5cm	사 진	6cm 내외
성 명 :	3cm		
주민등록번호 :			
유 효 기 간 :			
위 사람은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임을 증명함.			
년 월 일			
안 산 시 장			

(전면)

유 의 사 항
1. 이 증에 의한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은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감시활동과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2. 공사 시행기관 및 시공회사는 이 증을 소지한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(후면)

##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8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9. 25.

제 안 자 : 도시건설위원회6인

### 1. 수정이유

- 시민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감독여비는 공무원 여비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시민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감독여비를 공무원 여비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##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(경비지원)제1항중 “감독여비 및 회의참석수당 등 기본경비”를  
“감독여비를 공무원 여비에 준하여”로 한다.

## 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7조(경비지원)① 시장은 시민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감독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 등 기본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7조(경비지원)①.....</p> <p>..... 감독여비를 공무원여비에 준하여..... .....</p> <p>②(원안과 같음)</p>